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1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67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4. 12. 16.
판 결 선 고	2015. 1. 27.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8. 2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13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5. 8. 당초 [redacted]도지사를 상대로 [redacted]지방법원에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2013구합8918호였다가 재정단독결정을 거쳐 2013구단10999호로 되었다), 2013. 10. 25. 14:20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경정허가결정에 의하여 현재의 피고로 경정하였고, 이후 위 법원은 위 소송을 관할 법원인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0. 이 법원으로부터 제2차 변론기일(2014. 6. 3. 14:10)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6. 이 법원에 "일신상의 이유로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곤란하므로 기제출한 준비서면으로 갈음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4. 6. 3. 14:10 피고만 출석한 자리에서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들을 진술간주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제3차 변론기일(2014. 7. 1. 10:30)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2014. 6. 17.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라. 2014. 7. 1. 10:30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6. 이 법원으로부터 제4차 변론기일(2014. 7. 22. 11:30)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같은 달 15. 이 법원에 "기제출한 준비서면으로 출석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제4차 변론기일까지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바. 2014. 7. 22. 11:30 열린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13

사.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인 2014. 10. 7. 이 법원에 소취하 간주 효력을 다투며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제3차 변론기일과 제4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여 제4차 변론기일인 2014. 7. 22.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4. 8. 23. 이미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각 제2차 변론기일 및 제4차 변론기일에 앞서 불출석하는 대신 기제출된 준비서면으로서 출석에 갈음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 법원이 아무런 답변 없이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2차 변론기일에 앞서 기제출한 준비서면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데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14. 6. 3.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13

변론을 진행하여 기제출된 준비서면을 진술간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제4차 변론기일에 앞서 원고가 기제출한 준비서면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제4차 변론기일까지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점, 서증 등 증거들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점, 준비서면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제출하는 변론예고에 그치기 때문에 원고에게 법원에 그와 같은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변론기일의 출석에 갈음해 달라고 요청할 법률상 근거나 신청권이 없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답변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제4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4. 8. 23. 소취하 간주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효채

판사 최승준

판사 박가람